국무조정실 인건비(총액) (7001-100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	총무기획관실	0	010	012
명칭	클린외계	국무총리비서실	중무기확단결	0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프로그램 단위사업	
코드	7000	7001	100
명칭	국무총리실 행정지원	인건비	국무조정실 인건비(총액)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O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	202	1년	202	2년	중감	
^F됩경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 5 2.1
국무조정실	21 402	26.069	26.069	26 922	26.822	755	2.1
인건비(총액)	31,493	36,068	36,068	36,823	36,823	755	2.1

4. 사업목적

○ 국무조정실 소속 직원,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보수 및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○ 법령상 근거 : 공무원 보수규정,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(대통령령 제24429호)

ㅇ 추진경위 : 해당없음

6. 주요내용

○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
○ 사업기간 : 해당없음 ○ 사업규모 : 해당없음

ㅇ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
ㅇ 사업시행주체 : 국무조정실

ㅇ 사업 수혜자 : 공무원

○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(총액) (7001-101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	총무기획관실	0	010	012
명칭	클린외계	국무총리비서실	중무기확단결	0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000	7001	101
명칭	국무총리실 행정지원	인건비	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(총액)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O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	202	1년	202	2년	중감	
^[협정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국무총리비서실	9 (10	9,656	0.656	0.010	8,910	△746	△7.7
인건비(총액)	8,619	9,000	9,656	8,910	0,910	△/40	$\triangle 7.7$

4. 사업목적

○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직원,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보수 및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○ 법령상 근거 : 공무원 보수규정,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(대통령령 제24430호)

ㅇ 추진경위 : 해당없음

6. 주요내용

○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
○ 사업기간 : 해당없음 ○ 사업규모 : 해당없음

ㅇ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
ㅇ 사업시행주체 : 국무조정실

ㅇ 사업 수혜자 : 공무원

○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조세심판원 인건비(총액) (7001-102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	조세심판워	0	010	012
명칭	클린외계	국무총리비서실	소세심한천	0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프로그램 단위사업	
코드	7000	7001	102
명칭	국무총리실 행정지원	인건비	조세심판원 인건비(총액)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O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	202	1년	202	2년	증감	
/[변경 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조세심판원	10 521	11 906	11,806	11,560	11,560	△246	∧ 2.1
인건비(총액)	10,521	11,806	11,000	11,300	11,300	△ ∠4 0	△2.1

4. 사업목적

○ (조세심판원 인건비) 조세심판원 소속 직원,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보 수 및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○ 법령상 근거 : 공무원 보수규정 및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

ㅇ 추진경위 : 해당없음

6. 주요내용

○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
○ 사업기간 : 해당없음 ○ 사업규모 : 해당없음

○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
ㅇ 사업시행주체 : 조세심판원

○ 사업 수혜자 : 조세심판원 직원 등

○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국무조정실 기본경비(총액) (7011-200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 총무기획관실		0	010	012
명칭] 현반외계	국무총리비서실	중무기확단결	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프로그램 단위사업	
코드	7000	7000 7011	
명칭	국무총리실 행정지원	기본경비	국무조정실 기본경비(총액)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O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	사업명	2020년	202	1년	202	2년	증감	
	ላነ ቯ ሪ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Ī	국무조정실	2 257	2,508	2 508	2 807	2.807	299	11.9
	기본경비(총액)	2,357	2,308	2,508	2,807	2,807		11.9

4. 사업목적

○ 사무보조원 보수, 월정직책급 등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집행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○ 법령상 근거 :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(대통령령 제24429호)

○ 추진경위 : 인원·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비정규직보수, 특근매

식비, 운영수당, 월정직책급 등 집행을 통한 조직기능 유지

6. 주요내용

○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
○ 사업기간 : 해당없음 ○ 사업규모 : 해당없음

ㅇ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
ㅇ 사업시행주체 : 국무조정실

ㅇ 사업 수혜자 : 공무원

○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(총액) (7011-201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	총무기획관실	0	010	012
명칭	클린외계	국무총리비서실	중무기확단결	0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프로그램 단위사업	
코드	7000	7011	201
명칭	국무총리실 행정지원	기본경비	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(총액)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O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	2020년	202	1년	202	2년	증감	
	ፖርዝማ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Ī	국무총리비서실	1.027	1 100	1 100	1 140	1 140	12	1.1
	기본경비(총액)	1,027	1,128	1,128	1,140	1,140	12	1.1

4. 사업목적

ㅇ 사무보조원 보수, 월정직책급 등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집행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○ 법령상 근거 :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(대통령령 제24430호)

○ 추진경위 : 인원·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비정규직보수, 특근매

식비, 운영수당, 월정직책급 등 집행을 통한 조직기능 유지

6. 주요내용

○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
○ 사업기간 : 해당없음 ○ 사업규모 : 해당없음

ㅇ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
ㅇ 사업시행주체 : 국무조정실

ㅇ 사업 수혜자 : 공무원

○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조세심판원 기본경비(총액) (7011-202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	조세심판원	0	010	012
명칭	클린외계	국무총리비서실	조세심한천	0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프로그램 단위사업	
코드	7000	7011	202
명칭	국무총리실 행정지원	기본경비	조세심판원 기본경비(총액)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О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	202	1년	202	2년	중감	
^ ভার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조세심판원	595	663	663	661	661	△2	△0.3
기본경비(총액)	393	003	003	001	001		$\triangle 0.5$

4. 사업목적

ㅇ 조세심판원 행정실무원 보수, 월정직책급 등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집행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○ 법령상 근거 :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(대통령령 제24429호)

○ 추진경위 : 인원·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비정규직보수, 특근매

식비, 운영수당, 월정직책급 등 집행을 통한 조직기능 유지

6. 주요내용

○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
○ 사업기간 : 해당없음 ○ 사업규모 : 해당없음

○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○ 사업시행주체 : 조세심판원

ㅇ 사업 수혜자 : 조세심판원

○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국무조정실 기본경비 (7011-250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	총무기획관실	0	010	012
명칭	클린외계	국무총리비서실	중무기확단결	0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프로그램 단위사업	
코드	7000	7000 7011	
명칭	국무총리실 행정지원	기본경비	국무조정실 기본경비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O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어면 2020년		2021년		2022년		
^[협정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국무조정실	1 006	E 240	E 240	6 150	6 150	011	15.0
기본경비	4,886	5,348	5,348	6,159	6,159	811	15.2

4. 사업목적

○ 운영비, 여비, 업무추진비 등 국무조정실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집행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○ 법령상 근거 : 「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(대통령령 제31770호)

ㅇ 추진경위 : 해당없음

6. 주요내용

○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
○ 사업기간 : 해당없음 ○ 사업규모 : 해당없음

○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
○ 사업시행주체 : 국가(국무조정실)

ㅇ 사업 수혜자 : 공무원

○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 (7011-251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	총무기획관실	0	010	012
명칭	클린외계	국무총리비서실	중무기확단결	0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프로그램 단위사업	
코드	7000	7000 7011	
명칭	국무총리실 행정지원	기본경비	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O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	2020년	2021년		2022년		중감	
	ፖርዝማ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Ī	국무총리비서실	1,200	1,225	1,225	1,253	1,253	28	2.3
	기본경비	1,200	1,223	1,223	1,233	1,233	20	2.3

4. 사업목적

ㅇ 운영비, 여비, 업무추진비 등 국무총리비서실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집행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○ 법령상 근거 : 「국무총리비서실 직제」(대통령령 제30617호)

ㅇ 추진경위 : 해당없음

6. 주요내용

○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
○ 사업기간 : 해당없음 ○ 사업규모 : 해당없음

ㅇ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
○ 사업시행주체 : 국가(국무총리비서실)

ㅇ 사업 수혜자 : 공무원

○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조세심판원 기본경비 (7011-252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	조세심판워	0	010	012
명칭	클린외계	국무총리비서실	소세심한천	0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프로그램 단위사업	
코드	7000	7000 7011	
명칭	국무총리실 행정지원	기본경비	조세심판원 기본경비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O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	202	1년	202	2년	중감	
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조세심판원 기본경비	1,052	1,182	1,182	1,229	1,229	47	4.0

4. 사업목적

ㅇ 조세심판원 일반수용비, 여비, 업무추진비 등 총액인건비 미대상 경비 집행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○ 법령상 근거 :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

○ 추진경위 : 조세심판원 일반수용비, 여비, 업무추진비 등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경비 집행을 통한 조직기능 유지

6. 주요내용

○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
○ 사업기간 : 해당없음 ○ 사업규모 : 해당없음

ㅇ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
○ 사업시행주체 : 조세심판원

○ 사업 수혜자 : 조세심판원 직원 등

○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사 업 명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(7031-301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	정부업무평가실	0	010	012
명칭] 월반외계 	국무총리비서실	'3 T 1 T 5	U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	
코드	7000	7031	301	
명칭	국무조정실 행정지원	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	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	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O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	202	1년	202	2년	증감	
^F됩경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	157	188	188	177	177	△11	△5.9

4. 사업목적

○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 점검·관리 및 성과 공유를 통해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성과 창출 유도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법령상 근거 : 「정부조직법」상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
- ㅇ 추진경위
 - 대통령 선거 공약을 토대로 국정과제를 선정, 「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

계획」발표('17.7.19, 국정기획자문위원회)

- 「국정과제 관리계획」확정(17.7.20,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)

6. 주요내용

○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
○ 사업기간 : '09 ~ 계속

ㅇ 사업규모 : 해당없음

ㅇ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
ㅇ 사업시행주체 : 국무조정실

ㅇ 사업 수혜자 : 전 국민

○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구분	주기	주요내용				
	매월	■ 부처별 자체점검 실시, 온-나라 시스템에 등록 (각 부처)				
정기점검	<u>.</u> . ,	▪ 부처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추진실적 및 이행현황 등 점검				
	매년	• 연간 추진실적 종합 점검 및 국정과제 평가				
	점검	• 현장의견 수렴 및 애로사항 집중 점검				

국정운영 정보화(정보화) (7031-302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	정부업무평가실	0	010	012
명칭] 클민외계	국무총리비서실	국정과제관리관	U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	
코드	7000	7031	302	
명칭	국무총리실 행정지원	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	국정운영 정보화(정보화)	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O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ग्रो. ले स्वे	2020년	202	1년	202	2년	중감	
사업명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국정운영 정보화 (정보화)	954	965	965	981	981	16	1.7

4. 사업목적

- (위탁운영 및 유지보수) 온라인 기반으로 국무·차관회의 운영, 대통령 재가 및 국정과제 관리 등을 실시간 처리하는 국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
- (시스템 고도화) 국정운영 환경·절차 변경을 반영하고 진화하는 IT 기술에 부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응용 SW의 지속적인 고도화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○ 법령상 근거 :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(대통령훈령 제378호, 2018.1.19)

ㅇ 추진경위

- '06년 국정관리시스템 구축 ISP 수립

- '06~'07년 1차 구축사업 - 6개 시스템 구축 및 全부처 온-나라시스템 연계

- '07년 국정관리시스템 개통

- '07년 대통령훈령『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』제정

- '07~'08년 2차 구축사업 - 재가시스템 기능 고도화, 독립망 기관 연계 등

- '09년 3차 구축사업 - 재가문서 전자적 시행, 비상용국무회의시스템 등

- '10~'12년 국정관리시스템 기록물이관 1, 2차 사업, 실시간지원체계 구축

- '13~'14년 국정과제, 정상화과제 관리체계 구축 등 시스템 고도화

- '14~'16년 노후장비 교체 및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 변환

- '17~'18년 차세대 연계시스템 및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체계 개발

- '19~'20년 신기술 규격 HTML5 전환 및 차세대 EDMS 개발

- '21년 액티브X 대체에 따른 응용S/W 개선 중

6. 주요내용

○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
○ 사업기간 : 2006년 ~ 계속

○ 사업규모 : 국정과제 100개 관리, 대통령·국무총리 지시사항 연간 2천여회 실적,

재가문서 연간 2500여회, 국무・차관회의 연간 100여회 이상 처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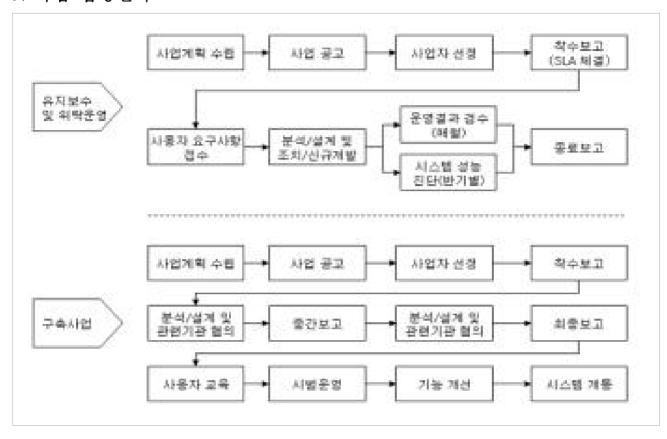
ㅇ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
ㅇ 사업시행주체 : 국무조정실

○ 사업 수혜자 : 대통령, 국무총리, 국무위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

○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

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(7031-303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	정부업무평가실	0	010	012
명칭] 할만와게	국무총리비사실	'8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	U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	
코드	7000	7031	303	
명칭	국무총리실 행정지원	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	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	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О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	रो ले म्ब	2020년	202	1년	202	2년	증감	
	사업명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ĺ	정부업무평가위	2.026	2 252	2 252	2 242	2 242	∧111	^ 2 2
	원회 운영	2,026	3,353	3,353	3,242	3,242	$ig \qquad riangle 111$	△3.3

4. 사업목적

- (정평위 운영)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 정부업무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함 으로써 국정성과 창출 뒷받침
 - 체감성과 중심의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 및 정부효율성 제고
 - · 각 부처의 자체평가 추진 지원을 통해 자율적 성과관리 정착
- (평가포상금)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분야별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우수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정부업무평가의 실효성 확보
 - · 정부업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성과중심의 행정마인드를 확립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<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>

- ① 법령상 근거 「정부업무평가기본법」(법률 제7928호, '06.3.24제정)
- ② 추진경위
 - 객관적·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정책평가위원회 구성('98.4.17)
 - 본위원회 내에 제도운영, 경제, 사회문화, 일반행정, 지방자치 소위원회 설치 및 평가수행
 - 정책평가위원회 기능 강화 및 기관평가 내실화 추진('99.1.19)
 - 평가대상기관을 40개 부처로 확대하고 기관평가 대상영역을 합리적으로 재설정
 - 「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」제정·시행('01.5월)
 -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각종 평가제도를 정비하여 종합적 평가방향 제시 및 효율적 평가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정책 평가위원회를 구성, 평가 추진
 - 총리훈령(국가경쟁력분석및국제평가지수제고에관한규정) 제정('04.4월)
 - 민관합동의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(의장:국무조정실장) 구성·운영('04.5월~)
 - 정부의 국가경쟁력 분석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·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국가경쟁력분 석협의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전환(11.8.1, 훈령 개정)
 - 「정부업무평가기본법」제정·시행('06.4월)
 - 총리 및 민간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'06년도부터 자체평가 5개 부문, 특정평가 10개 부문 등 명실 상부한 국정통합평가체계 마련
 - 국정과제 중심으로 특정평가체계 정비('13.5월)
 -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특정평가를 '국정과제 평가', '국정과제 지원 평가' 및 이를 반영한 '기관평가'로 간소화*
 - * ('12) 핵심과제, 일자리과제, 녹색성장과제, 정책관리역량 등 7개 부문 ('13) 국정과제 평가, 국정과제 지원 평가, 기관평가 3개 부문
 - 국정과제·비정상의 정상화·규제개혁 등을 중심으로 특정평가체계 개편('14.4월)
 - 국정과제·일자리창출·규제개혁 등을 중심으로 특정평가체계 개편('17.7월)
 - 일자리 창출과 국정과제 부문 통합, 정부혁신 신설 등 특정평가체계 개편('18.4월)

<정부업무평가결과 포상금>

- ① 법령상 근거 「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0조(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) 제2항
 - ·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, 포상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

② 추진경위

- '04년 정부업무 평가결과 보고회시(2004.12.24)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추진계획 보고
- '05년 정부업무 평가체계 개선에 따라 기관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
- '05년 예비비로 30.5억원을 확보하여 우수기관 등에 배분하였고, '06년도에는 정규예산으로 편성(36억)하여 '05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우수기관 등에 지급
- '06.4월「정부업무평가기본법」에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
- '07년 이후, 매년 평가분야별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금 지급 시행중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'98년 ~ 계속(포상금 '05년~)
- ㅇ 사업규모 : 해당없음
- ㅇ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ㅇ 사업시행주체 : 국무조정실
- ㅇ 사업 수혜자 : 중앙행정기관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□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확정·시달 → 시행계획에 따라 평가 지표 등 결정 → 정부업무평가지원단 구성, 평가 실시 → 평가결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상정 → 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 →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

국 무 총 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공공기관 평가 중앙행정기관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(국조실) (행안부) (기재부 등) 【특정평가】국무총리 【합동평가】행안부 등 * 공기업·준정부기관·기금(기재부) * 과학기술연(과기정통부 등) * 인문사회연(경인사연) 【자체평가】중앙행정기관 【자체평가】 지자체 * 지방공기업(행안부) 【개별평가】주관부처 【개별평가】주관부처

- □ 평가주관기관이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실시
 - ㅇ 중앙행정기관 평가
 -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며,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로 구분
 - ·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주요정책, 재정사업, R&D사업, 행정관리역량(조직· 인사 등)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
 - ·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정과제 추진성과, 규제혁신, 정부혁신, 정책소통 등을 평가
 - ㅇ 지방자치단체 평가
 - 각 부처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행안부 장관이 합동평가
 - 지자체 장이 고유사무 전반을 자체평가
 - ㅇ 공공기관 평가
 -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평가실시기관이 공기업, 출연연 등의 경영실적, 연구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

전자통합평가 정보화(정보화) (7031-305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	정부업무평가실	0	010	012
명칭] 할만되게	국무총리비서실	국정과제관리관	U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프로그램 단위사업			
코드	7000	7031	305		
명칭	국무총리실 행정지원	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	전자통합평가 정보화(정보화)		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O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	2020년	202	1년	202	2년	증감	
	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	전자통합평가	684	809	809	1 701	1 701	912	112.7
	정보화(정보화)	004	009	009	1,721	1,721	912	112.7

4. 사업목적

- (위탁운영 및 유지보수)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성과관리 및 업무 평가 자료의 온라인화 실시간 지원
- (시스템 고도화) 정부업무평가 자료분석·지식정보화를 위해 평가자료 DB의 구축 및 전자통합평가시스템 S/W의 지속적인 고도화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정부업무평가기본법(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)

제13조(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) ①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,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.

- ②전자통합평가체계는 평가과정,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관련 기관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국무총리는 전자통합평가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관련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
- ④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추진경위

- '03년 '평가인프라 구축'이 행정개혁로드맵 과제로 선정

- '05년 e-IPSES 1차 정보화사업(정보화전략계획 수립)('05.6~10)

- '06~'09년 e-IPSES 2~5차 정보화사업

- '10년 e-IPSES 2단계 정보화사업

- '11~'13년 e-IPSES 2단계 1~3차 고도화사업

- '14~'15년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 변환, 국정과제기반의 시스템 개편

- '16~'17년 웹리포팅 솔루션 도입, 액티브X 제거 등 시스템 고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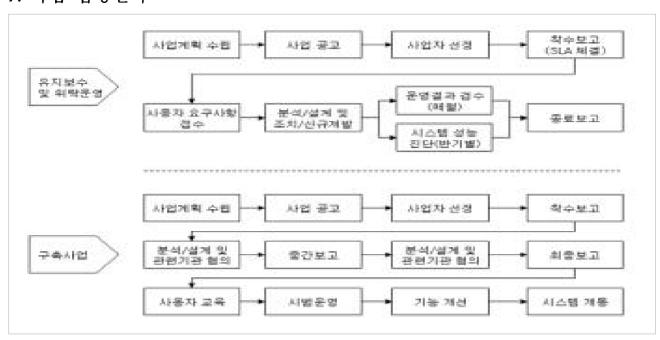
- '18~'20년 문재인정부 정부업무평가체계 개편 및 신기술 규격 HTML5 전환

- '21년 정부업무평가포털 구축 중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: '05년 ~ 계속
- 사업규모: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성과관리, 자체평가, 특정평가 및 자체 성과관리 지원, (연간) 성과관리 전략목표 약 2백여개, 성과목표 약 6백여개, 과제 2천여개, 자체평가 과제 약 2천여개, 실적 6만여건
- ㅇ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ㅇ 사업시행주체 : 국무조정실
- 사업 수혜자 :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 공무원, 민간 평가위원,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업무평가지워센터 등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

공공기관 갈등관리 (7032-301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이버스키케	국무조정실 및	그저ㅇ여시	0	010	012
명칭	일반회계	국무총리비서실	국정운영실	U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	
코드	7000	7032	301	
명칭	국무총리실 행정지원	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	공공기관 갈등관리	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O			О		100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्रो ले त्त	2020년	202	1년	202	2년	증감	
사업명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공공기관	496	455	455	404	404	^ E1	۸ 11 O
갈등관리	490	433	433	404	404	△ 51	△ 11.2

4. 사업목적

- (갈등관리 운영지원) ▲갈등관리정책협의회 운영, ▲정부업무평가(갈등관리 부문) 실시, ▲갈등관리 워크숍·현장점검 등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 수행
- (갈등관리연구)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 분석 또는 국가 차원의 전략 등 광 범위한 주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수행
- (교육 및 인프라 구축) '갈등 규정'에 의거, 갈등관리 연구기관을 지정·운영*하며, ▲맞춤형 컨설팅 ▲기본교육 ▲DB 운영·관리 등을 통한 갈등관리 역량 제고 도모
 - *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, 방통대 공존협력연구소,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등 3곳 지정·운영중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
 - 정부조직법 제20조(국무조정실)
 - ·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·감독,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·갈등의 관리, 정부 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. (제1항)
 -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(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·운영)
 -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(갈등관리 연구 등)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갈등관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(제1항)
 - ·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(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)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 (제2항)
 -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6조(갈등관리실태의 점검·보고 등)
 -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·평가하여야 한다. (제1항)

② 추진경위

- 대통령, 지속위에 '갈등해결시스템 구축방안' 마련 지시('03.9)
- 대통령, 갈등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대통령령 제정을 지시('06.9)
- 「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」제정('07.2.12, 시행 5.13)
- 갈등관리연구기관 지정·연장(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, '14.3.24~'22.12.31)
- 갈등관리연구기관 신규 지정(방통대 공존협력연구소·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, '20.1~'22.12)
- 「갈등관리기본법」제정안 입법 추진('20.12, 국회 제출)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'07 ~ 계속
- ㅇ 사업규모 : 해당없음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 및 민간경상보조
- ㅇ 사업시행주체 : 국무조정실 및 갈등관리연구기관(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방통대

공존협력연구소·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)

- 사업 수혜자 : 중앙정부·공공기관·지자체 갈등관리 담당자, 국민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내역사업명	구분	피보조 · 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금액 (2022예산)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	보조	단국대 분쟁해결 연구센터	90	100	
교육 및 인프라 구축	보조	방통대 공존협력 연구소	81	100	「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」제24조(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·운영)
	보조	한양대 갈등문제 연구소	81	100	

7. 사업 집행절차

- 갈등관리 교육 및 지자체 역량강화 사업(민간경상보조)
 - ▲갈등관리 연구과제 수행 기관 선정(국조실) → ▲사업계획서 제출(수행기관) →
 - ▲사업계획 승인(국조실) → ▲사업추진(수행기관) → ▲중간실적보고서 제출(수행기관)
 - → ▲중간점검(국조실) → ▲최종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(수행기관) → ▲최종보고서 검토 및 정산(국조실) → ▲사업성과 차년도 사업에 반영(국조실)

포항지진 진상규명및피해구제지원단 운영 (7032-302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이바장기	국무조정실 및	포항지진 진상규명 및	0	010	012
명칭	일반회계	국무총리비서실	피해구제 지원단	U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프로그램 단위사업	
코드	7000	7032	302
명칭	구민초기시 해저기의	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	포항지진 진상규명 및
70 70	수무중되는 생생시된	사외중합 중 한산한다 구선	피해구제 지원단 운영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 융자	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	
O	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रो ले म	2020년 결산	2021년		2022년		증감	
사업명	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포항지진 진상규명							
및 피해구제 지원단	7,778	13,734	13,734	3,097	3,097	△10,637	△77.5
운영							

4. 사업목적

○ 포항지진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활동을 통해 포항지진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 :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

② 추진경위

-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두차례('17.11, '18.2)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해 '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'(이하 '포항지진피해구제법', '20.4.1 시행)에 따라 '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'(이하 '진상조사위'), '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'(이하 '심의위') 및 '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'(이하 '지원단')을 설치('20.4~5월)
- 동 위원회 및 지원단의 운영, 진상조사, 피해구제 손해사정, 피해구제지원금 지급, 연구용역, 국회 및 대통령 보고, 주민설명회 등 추진
 - * 진상조사위원회는 '21.7월 활동 종료하여 관련 업무 종료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ㅇ 사업기간 : '20~'22
- 사업규모 : 해당없음
- ㅇ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ㅇ 사업시행주체 :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
 - * 진상조사위원회는 '21.7월 활동 종료하여 관련 업무 종료
- 사업 수혜자 : 포항지진 피해자 및 포항시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〈피해구제심의위 피해구제 심의절차〉

신청 • 접수 단계 (포항시)

신청서 제출 : 현장 34개소(읍·면·동 29개소, 거점 접수처 5개소), 포항시 홈페이지(온라인, 모바일) 등

접 수(포항시 위임): 신청서 검토 및 서류 보완(1개월 이내) → 완결 전체자료 스캔 → 자료 송부(조사 위탁기관) ※ 자료 승부시 NDMS 기 등록 여부, 기 자급금 내역 확인·정리 후 함께 승부

1

조사 • 평가 단계 (위탁기관)

사전조사 : 구비서류 검토 후 서류 분류 · 보완 ※ 서류 미비 건은 포항시 통보 및 보완 요청, 신청인에게 안내 병행

본조사 : 피해자 면담 → 현장실측 → 사진촬영 → 기타 자 료수집 → 내부집기류 등 조사 → 물가조사

피해액 및 지원금 산정 : 피해액 산출 → 기 지급금 내역 확인 → 조사 ·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· 제출

1

지원금 결정 단계 (위원회)

조사ㆍ평가 결과보고서 검토

피해구제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의결

사 업 명 대테러센터 운영 (7032-303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	대테러센터	0	010	012
명칭] 할만되게	국무총리비서실	내데더센터	0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	
코드	7000	7032	303	
명칭	국무총리실행정지원	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	대테러센터 운영	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О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र्ग स	2020년	2020년 2021년		202	2년	증감	
사업명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대테러센터	773	853	853	881	881	28	3.3
운영	773	633	000	001	001	20	3.3

4. 사업목적

- 테러로부터 국민생명·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테러예방 및 대응 활동 추진*
 - *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속의 '대테러센터' 설치·운영('16.6월)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 :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
- ② 추진경위

- 테러방지법 제정('16.3.3)
- 대테러센터 신설(국무조정실 소속)('16.6.4)

6. 주요내용

○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
○ 사업기간 : '16년 ~ 계속

○ 사업규모 : 해당없음

○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
ㅇ 사업시행주체 :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

ㅇ 사업 수혜자 : 전 국민

○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〈대테러센터 운영 사업비 집행절차〉								
배정		예산신청		예산집행		집행결과통보		
분기별 예산배정	⇒	각 사업별 예산신청	⇔	각 사업별 예산집행	⇔	집행결과 총무과 통보		
국조실 총무과		안전관리부 협력조정부 기획총괄부		기획총괄부		기획총괄부		
		기획총괄부						

사 업 명 인권보호관 지원 (7032-304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	국무조정실 및	대테러	_	010	012
명칭	일반회계	국무총리비서실	인권보호관 지원반	0	일반 • 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000	7032	304
명칭	국무총리실 행정지원	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	인권보호관 지원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О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	202	1년	202	2년	증감	
스타크 3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인권보호관	296	210	210	373	272	E4	16.0
지원사업	296	319	319	3/3	373	54	16.9

4. 사업목적

○ (인권보호관 지원사업)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'대테러 인권보호관'의 활동을 지원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 : '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' 및 동법 시행령, '대 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'(국무총리 훈령)
- ② 추진경위

- 테러방지법 제정('16.3.3)
-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정('16.5.31)
-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(국무총리 훈령) 제정('16.6.1)
- 대테러 인권보호관 위촉('16.7.21)
-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('16.7.21)

6. 주요내용

○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
ㅇ 사업기간 : '16년~계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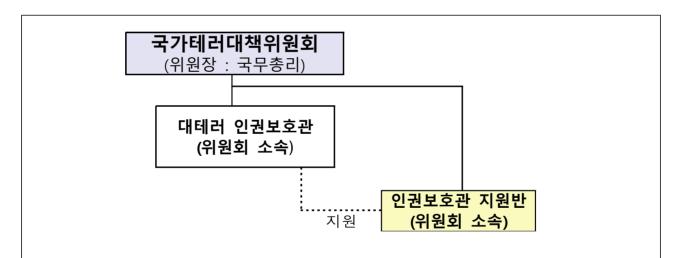
ㅇ 사업규모 : 해당없음

ㅇ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
ㅇ 사업시행주체 :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

ㅇ 사업 수혜자 : 전 국민

○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

- (자문·개선)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 정책·제도 관련 안건 검토,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
- (민원처리)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내 처리,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처리시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민원인에게 통지
- (교육·홍보) 인권관련 전문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인권관련 교육·홍보 프로그램 개발, 관계기관 대상 교육 실시 및 보급

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(7032-305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	미세먼지개선	0	010	012
명칭	글 반외계	국무총리비사실	기획단	0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	
코드	7000	7032	305	
명칭	국무총리실 행정지원	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	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	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О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	202	1년	202	2년	증감	
^[월경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미세먼지개선 기획단 운영	603	718	718	551	551	△167	△23.3

4. 사업목적

○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·운영 지원과 미세먼지 정책 조정 추진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: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0조(미세먼지특별 대책위원회의 설치) 및 제12조(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)

② 추진경위

-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·관리를 위해 범정부 미세먼지 대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촉구('17.12~'18.5월, 국회 미세먼지특위)
- '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('17.9)' 및 '비상·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('18.11)' 발표
- 미세먼지특별법('18.8.14 공표, '19.2.15 시행)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법정조직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('19.2.15) 출범

6. 주요내용

○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
○ 사업기간 : '19.2.15~'24.2.14 (5년 한시)

ㅇ 사업규모 : 해당없음

○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
ㅇ 사업시행주체 : 국무조정실

ㅇ 사업 수혜자 : 전 국민

○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 : 직접수행

규제개혁위원회 운영 (7033-301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	그게고거시	0	010	012
명칭] 혈반외계	국무총리비서실	규제조정실	0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프로그램 단위사업	
코드	7000	7000 7033	
명칭	국무총리실 행정지원	규제개혁	규제개혁위원회 운영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O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	202	1년	202	2년	증감	
^[월경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규제개혁위원회 운영	944	1,035	1,035	1,059	1,059	24	2.3

4. 사업목적

 ○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 및 비효율적인 행정규제 추가·신설 억제 → 사회·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
-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(설치)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·조정하고 규제의 심사·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

를 둔다.

- 행정규제기본법 제36조(행정지원 등)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관련 제도를 연구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8조(수당 등)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 위원·조사요원·이해관계인·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·여비 기타 경비 외에 그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추진경위

- 행정규제기본법(법률제5368호, 1997.8.22)에 따라 종합적인 규제개혁추진 기구로서 민·관이 참여하는「규제개혁위원회」를 구성·운영
- 1998년 4월,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
- 현 정부 출범 이후 '21.12월말 기준, 총 96회 본회의 및 총 16회 분과위원회 개최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1998~ 계속
- ㅇ 사업규모 : 해당없음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ㅇ 사업시행주체 : 국무조정실
- 사업 수혜자 : 대한민국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절차	담당기관	주요내용
정책입안	소관부처	· 법령 제.개정에 대한 초기 검토, 이해관계자·관계부처 논의 ·해당 법령안에 대한 사전검토(off-line) - 규제심사 대상여부, 분석서 작성유형(표준/간이형)
▼		
규제영향분석서 작성	소관부처	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제출 ※ 사전검토시 협의된 작성유형으로 작성 ※ 중소기업 영향분석은 '중소기업 규제 차등화' 매뉴얼 활용
V		
규제심사 대상여부판단	규제조정실 (규제심사관)	· 규제심사 대상 여부 / 규제영향분석 유형(표준/간이형) 결정 /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예비검토 ※ 심사 제외규정(법 제3조 제2항): 심사종결
V		
입법예고	소관부처	· 관련법령 제·개정안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
▼		
규제영향분석서 검증	규제연구 센터	· 규제비용 등의 적정성 검증 및 검증보고서 작성.제출 ※ 비용편익분석 사항 수정·보완(소관부처) ※ 규제연 검증결과에 따라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/ 표준 또는 간편절차, 비용상 중요여부 확정 ※ 폐지·완화규제: 비용분석·검증·적립(Banking)만 실시
V		
비용분석위원회 심의	비용분석 위원회	· 표준절차(간편절차 제외) 또는 비용상 중요규제(직간접 비용 100억원이상, 피규제자 100만명 이상)는 비용분석 위원회 심의 ※ 위원회 심의의견은 예비심사 前까지 검토하여 보완
▼		
검증의견 종합	규제심사관 (규제조정실)	· 규제연구센터 검증의견 및 기타 검토의견 종합 · 종합된 검토의견 소관부처 전달
•		· 국조실·규제연 검토의견, 이해관계자·관련부처 의견, 영향평가 결과
자체심사	소관부처	· 국소글·규제한 검도의한, 이에한계시 한민구시 의한, 영영영기 결과 등을 고려 규제영향분석서 수정·보완 ·소관부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
▼		
규제심사	규제개혁 위원회	· 신설·강화 규제심사(규제영향분석서 첨부) · 위원회 예비심사 → 본심사 ※ 예비심사에서 비중요규제로 의결된 경우 본심사 제외

규제개혁 정보화(정보화) (7033-302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이버스키케	국무조정실 및	그게고거시	0	010	012
명칭	일반회계	국무총리비서실	규제조정실	0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프로그램 단위사업	
코드	7000	7033	302
명칭	국무총리실 행정지원	규제개혁	규제개혁 정보화(정보화)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O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र्ग स	2020년	202	1년	202	2년	증감	
사업명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규제개혁	1 240	604	604	899	899	205	10.0
정보화	1,240	604	604	699	899	295	48.8

4. 사업목적

-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법령 제·개정시 실시하고 있는 규제심사 지원, 범부처 차원으로 추진되는 규제혁신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
- 국민에게 규제정보를 알기 쉽게 공개하는 규제정보포털 구축·운영, 규제개혁신문고 운영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<행정규제기본법>

제6조(규제의 등록 및 공표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·내용·근거·처리기관 등을 규제개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에 등록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심사요청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.

제17조(규제 정비의 요청)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(告示)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(이하 "정비"라 한다)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34조(규제개선 점검·평가)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·점검하여야 한다.

② 추진경위

-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마련 ('08.4.4)
-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(ISP) 수립 ('08.7~'08.11)
- 규제정보화 1단계 구축사업 ('09.3~'09.8)
- 규제정보화 2단계 구축사업 ('10.4~'10.10)
- 규제정보화 3단계 구축사업 ('11.3~'11.9)
- 규제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('12.6~'12.12)
- 규제정보포털 및 규제정보화 고도화 ('14.12~'15.4)
- 규제정보화시스템 발전방안 연구 ('16.7~'16.10)
- 규제정보시스템 G클라우드 전환사업 ('20.5~'20.12)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'09년 ~ 계속
- ㅇ 사업규모 : 해당없음
- ㅇ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ㅇ 사업시행주체 : 국무조정실
- 사업 수혜자 : 국민·기업,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, 규제개혁위원회 등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기획·검토	계획수립	사업자 선정 · 계약	개발·구축	감리	검사ㆍ종료
기획・검토	사업계획서(안)작성	제안요청	사업착수	감리법인 선정	완료검사
기획·검토	사업계획서(안)작성	제안요청서 작성	착수계 접수 · 검토	감리법인 선정	완료검사
	기술적용계획수립	입찰안내사항	진도/품질관리	감리시행	인수 및 하자보수
	기술평가 시행	(제안안내서) 작성	진도/품질관리	감리계획 접수	산출물 인수
	보안성 검토	입찰공고	변경관리	감리시행	하자보수 내용확정
		제안요청 설명회 개최(필요시)	과업변경	감리결과 조치	사업종료
		예정가격작성 (필요시)	예산관리	감리결과 조치확인	지체상금 산정 및 정산(필요시)
		입찰마감	선금지급	감리 사업관리	잔금대가 자급
		사업자선정 및	기성대가 지급	감리 변경관리	
		계약체결	보안관리	감리 보안관리	
		제안서 평가	보안관리	감리완료	
		협상 및 낙찰자 결정	보안적합성 검증	검사 및 대가지급	
		제안서 보상	개인정보보호		
		계약서류 준비 및 계약체결	하도급 관리		
			하도급 관리		

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운영 (7033-303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	7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	1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	민관합동	0	010	012
명	형칭	할만되게	국무총리비서실	규제개선추진단	U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000	7000 7033	
명칭	국무총리실 행정지원	규제개혁	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운영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O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रो ले छ	2020년	202	1년	202	2년	증감	
사업명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운영	301	313	313	314	314	1	0.3

4. 사업목적

○ 중소기업·소상공인이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의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지원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
- 「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국무총리 훈령, 제615호)

② 추진경위

- 국경위 산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폐지('13.2)됨에 따라, 기업 현장의 애로 해소채널의 공백을 우려하여 민생안정, 일자리 창출,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민관합동의 규제개선조직 설립 필요성 증대
- 대한상의에서 추진단 설치건의를 계기로 대한상의 및 중기중앙회(부회장), 국조실(규제조정실장) 공동단장 체제로 규제개선 추진
- 「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총리훈령, 제615호, '13.8.16 제정)에 따라, 민.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발족('13.9.12)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계속('14년~)
- ㅇ 사업규모 : 해당없음
- ㅇ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무조정실(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)
- ㅇ 사업 수혜자 :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를 겪고 있는 국민, 기업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- 기업건의·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건의 과제를 접수 및 발굴하여 내부 검토를 거친 후 부처 의견 조회
- 부처 답변 이후 수용과제는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로 관리하여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, 건의자에게 결과 통지

사 업 명 현안과제 추진 지원 (7035-301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	주한미군기지	0	010	012
명칭] 혈반외계	국무총리비서실	지원단 등	0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000	7035	301
명칭	국무총리실 행정지원	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	현안과제 추진 지원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О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	202	1년	202	2년	증감	
^[월경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현안과제 추진	1,204	1,364	1,364	810	810	△554	△40.6
지원	1,204	1,304	1,304	610	010	△ △ 334	△40.0

4. 사업목적

< 주한미군기지 이전 · 반환 지원 >

- 주한미군기지 이전·반환·공여사업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·조정
- ㅇ 평택 미군기지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
- ㅇ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지원 및 사회적 갈등관리

< 세월호지원단 운영 >

○ '15.3월 제정·시행된「세월호피해지원법」에 따른「4.16세월호참사 피해자

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」운영과 세월호 피해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설치한 세월호지원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임

<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 >

-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 신뢰 확보를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식품안 전 추진체계를 구축·운영함으로써 다수 부처에서 담당하는 식품안전정책을 통합·조정하여 효율적인 식품안전정책의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음
- * 동 내역사업은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국무조정실내에 사무국(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)을 설치·운영하면서 위원회 운영경비, 식품안전정책 수립지원 연구조사 등에 필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임

<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운영 >

- 중앙권한 이양 등을 통해 실질적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
- '성장과 보존이 조화'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추진 지원
 - * 영어교육도시, 헬스케어타운, 신화역사공원, 첨단과기단지 등

<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운영 >

- 동 내역사업은 '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*' 추진상황 점검·관리를 위해 국무조정실 내 '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' 운영을 지원하는 것임
 - * '22년까지 3대 분야(자살예방, 교통안전, 산업안전) 사망 절반 수준 감소 목표로 추진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< 주한미군기지 이전 · 반환 지원 >

- 법령상 근거 : 「주한미군기지이전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총리훈령, '08.9) * 제명 변경('22.1월) : 주한미군기지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
- ㅇ 추진경위
 -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정 필요성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련 정책조정 협의체 구성·운영 결정('08.4, 청와대 안보정책실무 조정회의)
 - 「주한미군기지이전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총리 훈령) 제정 및 지원단 설치('08.9)

< 세월호지원단 운영 >

- 법령상 근거 : 「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제3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
- ㅇ 추진경위
 - '15.1.28,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위해 「4·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(약칭 : 세월호 피해지원법)」 제정('15.3.29 시행)
 - '15. 3, 국무총리 소속 '4·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' 구성 및 지원조직인 '4·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' 발족
 - ~현재, 18개 피해지원 대책* 및 추모공원 조성 등 추모사업 추진·지원 중
 - * 세월호피해지원법상 18개 대책 중 생활지원금, 긴급복지 지원 등 8개 대책 완료, 피해지역(안산, 진도) 경제활성화, 안산 트라우마센터 운영, 공동체 회복 프로 그램 운영 등 10개 중장기 지원대책 추진 중

<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 >

- 법령상 근거 : 식품안전기본법("08.12.14) 제7조~제8조, 제11조~제13조, 시행령 제7조
- ㅇ 추진경위:
- '08. 6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·공포
 - '08.12월 식품안전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('08.12.14)
 - '08.12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
 - '09. 2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5개 전문위원회 구성
 - '09. 5월 제1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('09~'11년) 수립
 - '11.11월 제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('12~'14년) 수립
 - '14.12월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('15~'17년) 수립
 - '17.12월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수립
 - '18. 5월 제4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('18~'20년) 수립
 - '21. 2월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('21~'25년) 수립
 - '09~'21년 연도별 식품안전관리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등

<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운영 >

- ㅇ 법령상 근거 :『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』
- ㅇ 추진경위
 - '05. 5월 : 정부혁신위에서「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」확정·발표
 - '05. 7월 :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 및 실무위 구성
 -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설치

- '05.10월 : 추진위에서「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」확정」발표
- '06. 7월 :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제정·시행 (제1단계 제도개선 1,062건)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구성
- '06. 8월 :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설치 「제주특별자치도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」체결
- '07. 8월 : 제주특별법 개정, 핵심산업 육성에 필요한 추가 제도개선 (제2단계 제도개선 278건)
- '09. 3월 : 제주특별법 개정, 관광분야 3개 법률 일괄이양 및 영어교육도시 설치 근거 마련 등 추가 제도개선(제3단계 제도개선 365건)
- '10. 5월 : 제주특별법 개정, 관광부가세 환급, 투자개방형병원 등 추가 제 도개선과제 국회 제출(제4단계 제도개선 2,152건)
- '10. 6월 :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준공 및 개발 완료, (주)다음커뮤니케이션 등 71개 기업 유치
- '10.11월 : 입법체계 개선 연구용역 실시('10.5~11월, 법제연구원), 헬스케어 타운 용지보상('10.10)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완료('10.11)
- '11. 4월 : 제주특별법 개정, 119개 법률 2,103개 사무 일괄이양, 조세특례제한 법 등 10개 법령 31개 사무 개별특례(제4단계 제도개선 2,134건)
- '11. 5월 :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용역('11.5~12)
- '11. 9월 : 제주영어교육도시 1단계 시범학교(NLCS Jeju, KIS Jeju)개교
- '11.12월 : 헬스케어타운 부지조성공사 착공 및 투자유치 진행
- '12. 3월 : 신화 · 역사공원 부지조성공사 준공
- '12.10월 :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중국 녹지그룹 본계약 (약 1조원)체결 및 착공
- '12.10월 : 사립국제학교(Branksome Hall Asia) 정상 개교
- '13. 3월 : 제주 휴양형 주거단지 건축공사 착공
- '13. 7월 : 제주영어교육도시조성 사업기간 연장결정('2015→'2021 / 6년 연장)
- '13. 9월 : 신화·역사공원 조성사업 본계약(A·R·H지구 약 1조1천억원)체결
- '13.11월 : 제주 내국인 면세점 판매물품 가격한도 조정
- '14. 4월 : 신화·역사공원 J지구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개관
- '15. 1월 : 제주 내국인 면세점 판매물품 가격한도 상향 시행(\$400→\$600)
- '15. 2월 : 신화·역사공원 복합리조트 착공
- '15.7월 : 제주특별법 전부개정, 자치경찰 사무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(제5단계 제도개선 698건)
- '16. 2월 :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성과평가 연구용역 실시(2.22~6.1일)
- '16.12월 : 제주 제2첨단과기단지 개발계획 승인 및 지정고시
- '17. 3월 :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 성과평가 연구용역 실시(3.8~6.6일)

- '17. 8월 :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개최(총리 주재) : 6단계 제도개선과제 42건 수용
- '17.10월: 영어교육도시 4번째 국제학교(美.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) 개교
- '17.12월 : 제6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(12.28)
- '18. 2월 : 제주특별자치도 2017년 성과평가 연구용역 실시(2.14.~5.26일)
- '18. 2월 :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 계획 수립
- '18. 7월 :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 관련 전문가 포럼 개최(7.5-6)
- '18.11월 :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의견수렴·토론 워크숍
- '19. 2월 :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·검토
- '19. 3월 : 제주특별자치도 2018년 성과평가 연구용역 실시(3.4~6.12일)
- '19. 6월: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용지보상 착수
- '19. 12월 : 제6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
- '20. 3월: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 성과평가 시행계획수립(제주지원위 심의)
- '20. 5월 :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착공('20.5)
- '20. 7~12월 : 7단계 제도개선과제 관계부처 협의·조정
- '21. 2월: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 성과평가 연구용역 실시(2월~5월)
- '21. 3월 : 7단계 제도개선과제 제주지원위원회 심의 · 의결
- '21. 11월 : 7차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

<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운영 >

- 법령상 근거 : 국민생명 지키기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(국무총리 훈령 제785호, '21.6.16 일부개정)
- ㅇ 추진경위
 - 대통령 지시('18.1.10, 신년사)에 따라 '22년까지 3대 분야(자살예방, 교통안전, 산업 안전) 사망 절반수준 감소를 목표로 「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」 확정 ('18.1.23, 국무회의)
- * 2022년까지 자살예방, 교통안전, 산업안전 등 '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'를 목표로 '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'를 집중 추진하겠음('18.1.10, 신년사)
- * <u>교통안전, 산업안전, 자살예방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국무총리가 관장</u> 하기로 했기 때문에 청와대 내에 화재 TF를 구성하는 것을 논의해주시기 바람 ('18.1.29, 수석보좌관회의)
 - ※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주요 내용

(자살예방) △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△연령·대상별 자살예방 추진 △ 자살 고위험군 지원체계 구축 △자살예방 홍보 및 캠페인 등 (교통안전) △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△교통약자 맞춤형 안전환경 조성 △운전자 책임성 강화 △교통 인프라 확충 등

(산업안전) △발주자 책임 부여 및 원청 역할 확대 △고위험분야 집중관리 △현장 관리·감독시스템 체계화 △안전인프라 확충 등

- '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' 추진상황 점검·관리를 위해 국무조정실에 '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'신설(18.5.2)

※ 2개 팀(총괄기획팀, 교통·산업안전팀) 15인(단장 포함)으로 구성·운영중

6. 주요내용

< 주한미군기지 이전 · 반환 지원 >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ㅇ 사업기간 : 2008년 ~ 2026년
- ㅇ 사업규모 : 해당없음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ㅇ 사업시행주체 : 국무조정실
- ㅇ 사업 수혜자 : 국민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< 세월호지원단 운영 >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'15 ~ 계속
- ㅇ 사업규모 : 해당없음
- ㅇ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가(국무조정실)
- 사업 수혜자 : 4.16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피해자, 피해지역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<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 >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: '09~계속
- ㅇ 사업규모 : 해당없음
- ㅇ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가(국무조정실)
- 사업 수혜자 : 국민 등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<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운영 >

○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
○ 사업기간 : '06~계속

ㅇ 사업규모 : 해당없음

○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
ㅇ 사업시행주체 : 국무조정실

○ 사업 수혜자 : 제주특별자치도

○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<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운영 >

○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
ㅇ 사업기간 : '18년 ~ '23년

ㅇ 사업규모 : 해당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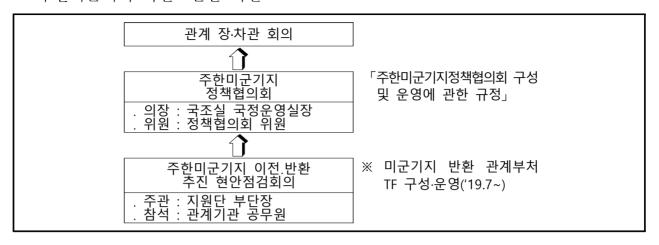
ㅇ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
○ 사업시행주체 : 국가(국무조정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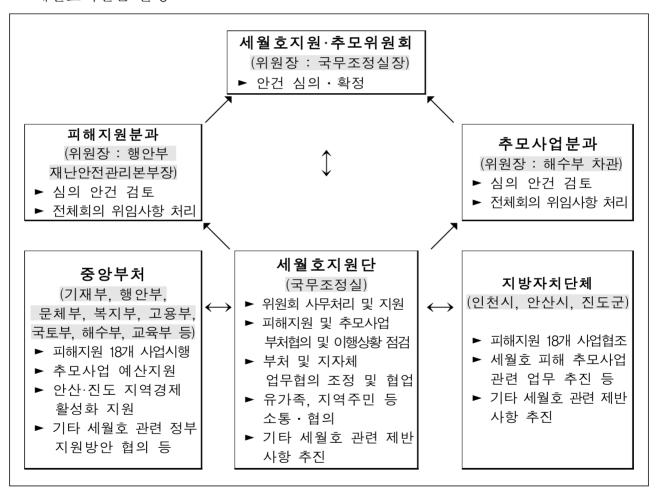
○ 사업 수혜자 : 국민 등

○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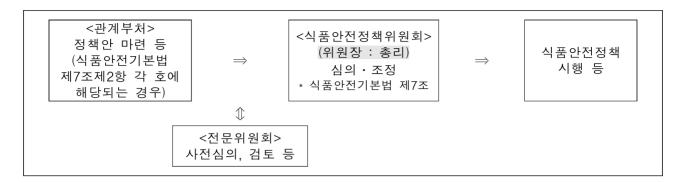
< 주한미군기지 이전 · 반화 지원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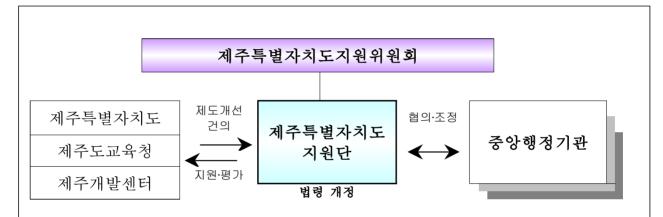
< 세월호지원단 운영 >



<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 >



<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운영 >



-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: 특별자치도 운영·국제자유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 심의·확정
-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: 제주지원위 업무 처리 및 주요과제 협의·조정
- 제주특별자치도 : 권한이양 및 제도개선 과제 필요성을 검토하여 제주지원단에 관계부처 협의·조정을 건의하고 확정된 제도개선 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
- <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운영 >
- 대책별 과제 추진(소관 부처) → 이행상황 자체점검(소관 부처) → 이행상황 종합 점검(국조실) → 실무점검협의회(사회실장 주재) 및 점검협의회(국조실장 주재)에서 점검·보완(국조실) → 보완필요사항에 대한 과제별 개선계획 수립(소관 부처) → 차기 이행점검 시 확인 및 연말 종합점검·평가에 반영(국조실)
- ※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범정부 추진체계

'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'점검협의회

- △ 관계 차관회의(국조실장 주재)
- △ 3대 분야별 과제 추진상황 점검, 부처간 조정 등

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

교통안전 종합대책

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

실무점검협의회

(사회실장 또는 추진단장 주재)

△국조실, 복지부, 교육부, 고용부, 국방부, 여가부 등

실무점검협의회

(사회실장 또는 추진단장 주재)

△ 국조실, 국토부, 행안부, 경찰청 등

실무점검협의회

(사회실장 또는 추진단장 주재)

△국조실, 고용부, 국토부, 산업부, 공정위 등

* 점검 결과,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현안조정회의(총리 주재)등에 상정하여 대책 마련

사 업 명 세종시지원단 운영 (7035-305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	세종시지원단	0	010	012
명칭	[월반외계	국무총리비서실	세당시시전인	U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000	7035	305
명칭	국무총리실 행정지원	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	세종시지원단 운영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O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रो ले म	2020년	202	1년	202	2년	증감	
사업명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세종시지원단 운영	282	317	317	314	314	△3	△0.9

4. 사업목적

- 세종시의 안정적 정착, 인접 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원 등 정부 정책의 심의기구인 「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」(위원장:국무총리)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
- 부처 추가이전 등 행정중심도시 기반 강화, 이전기관 행정효율성 제고, 도시 자족기능 확충 강화 및 정주환경 개선 지원
- ㅇ 세종시 도시 조성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관계기관간 정책조정 및 협업 지원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ㅇ 법령상 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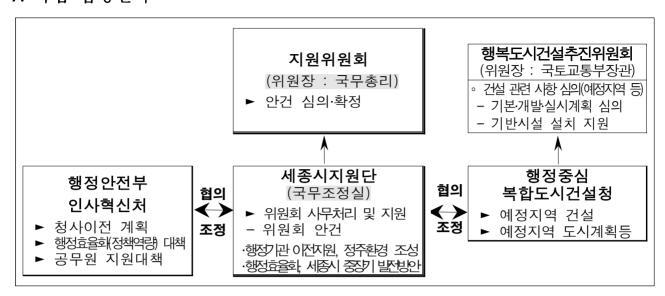
- 「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」(제정 '10.12.27)
- * 제9조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
- 「세종시지원위원회등의설치・운영에관한규정」(대통령령, 제정 '11.1.28)

ㅇ 추진경위

- 총리실내 '세종시 이전지원T/F' 설치('10.10)
- 「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제정('10.12.27)
- * 지원위원회, 실무지원위원회, 지원단 설치를 규정
- 「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제정('11.1.28)
-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출범('11.3.16)
- 세종특별자치시 출범('12.7.1) 및 1·2·3단계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지원('12~'14년)
- 정부출연연구기관 세종시 이전 지원('13~'16년)
- 4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('15~'16년 상반기)
- 국정과제('17.8): 77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2011년~계속
- ㅇ 사업규모 : 해당없음
- ㅇ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ㅇ 사업시행주체 : 국무조정실
- ㅇ 사업 수혜자 : 국민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

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(7035-306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	그저ㅇ여시	0	010	012
명칭] 할만의게 	국무총리비서실	국정운영실	0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000	7035	306
명칭	국무총리실 행정지원	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	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О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	रो ले म्हे	2020년	_		202	2년	증감	
	사업명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Ī	국제개발협력	1 126	2.152	0.152	2.254	2.254	101	4.7
	위원회 운영	1,136	2,153	2,153	2,254	2,254	101	4.7

4. 사업목적

-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통합적 ODA 추진체계 공고화
 - 체계적·실효적인 ODA 전략·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·시행계획 수립, 유·무상 및 양·다자 사업 연계, 평가, 홍보 등을 통해 ODA 통합·조정 강화 및 원조 효과성 제고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ㅇ 법령상 근거 :
 -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('20.11.27 전부개정안 시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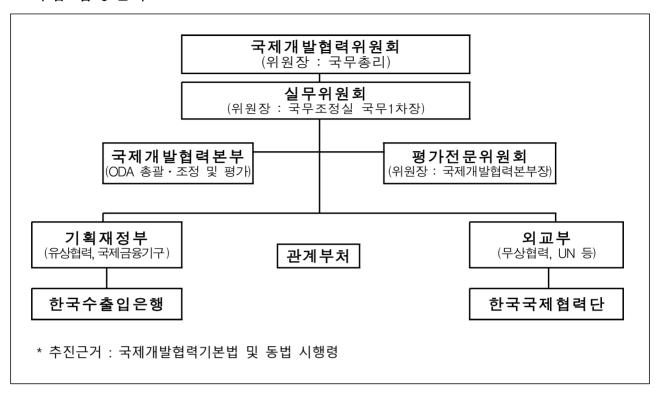
- ·ODA 정책의 통합적·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 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위원회 구성(법 §7①·⑤)
- · 위원회 업무처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무기구 설치(법 §9①)
- · 위원회는 ODA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(법 §16)하며,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전문위원회 구성·운영(시행령 §13)
- ·대국민 홍보 및 인식 제고 방안을 시행하고 종합정보 제공체계 구축·운영(법 §18)
- ·ODA 관련 전문인력 양성(법§19) 및 국제교류·협력 강화(법 §20)
- · ODA 통계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 운영(법 §21①)

ㅇ 추진경위:

-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(대통령령 제191298호, '06.1.26 제정)에 의거,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구성('06.3.2, 1차 회의 개최)
- OECD DAC에서 ODA 통합추진체계, 통합평가체제 구축 등 권고('08.9, DAC 특별검토)
- ODA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, 통합평가체제 구축 결정('09.5.1)
- 평가소위원회(現평가전문위원회, '20.11~) 구성('09.8.1)
- OECD 개발원조위원회(DAC) 가입 확정('09.11)
-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·시행('10.7.26)
- 제1차('10.12) 및 제2차('15.11)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
- ODA 추진체계 개편방안 마련('18.6.22)
-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('20.11.27 시행) 및 국제개발협력본부 출범('21.2.25) ※ 주요 개정내용: 전략 수립 사업 연계조정 및 평가 등 국제개발협력委 기능 강화, 사무기구 설치 근거 신설 등
-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('21.1월)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'11년 ~ (계속)
- ㅇ 사업규모 : 해당없음
- ㅇ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ㅇ 사업시행주체 : 국무조정실
- 사업 수혜자 : ODA 관계부처, 민간단체 등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

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 (7035-314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	새만금사업	0	010	012
명칭	<u> </u>	국무총리비사실	추진지원단	0	일반 • 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프로그램 단위사업		
코드	7000	7000 7035		
명칭	국무총리실 행정지원	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	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	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О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지어면 2020년		2021년		2022년		
^[월경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새만금사업추진	160	173	173	171	171	△2	∧ 1 2
지원단 운영	100	173	1/3	1/1	1/1	42	$\triangle 1.2$

4. 사업목적

○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 위원회(공동위원장 : 국무총리, 민간위원장) 운영, 새만금 주요 정책조정 및 제도 개선 등 추진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ㅇ 법령상 근거
 -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2*(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)
 - *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

추진지원단을 설치한다. ② 지원단은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·조정 및 새만금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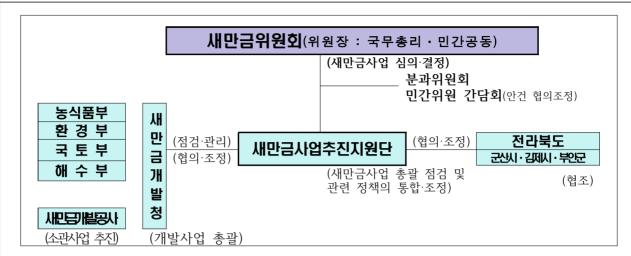
-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*(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
- *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·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 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위원회를 둔다.

ㅇ 추진경위

- 국무조정실 내에 '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'설치를 담은 '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'개정(15.8.11.)
- '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' 개정('16.2.12. 시행), '새만금사 업추진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'(총리훈령 제662호, '16.2.11. 제정)에 따라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('16.2.12.)
- 국정과제(4-2-78*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(산업부·행자부·국토부)) 이행을 위한 전담 운영
- *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매립, 국제공항 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'16년 ~ 계속
- ㅇ 사업규모 : 해당없음
- ㅇ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ㅇ 사업시행주체 : 국가
- ㅇ 사업 수혜자 : 국민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

- o 새만금위원회 : 새만금사업 주요사항 심의·의결
 - 분과위원회(2개 분과): 토지용도별 사업 시행, 수질·환경대책 등 전문적인 검토
 - 민간위원간담회 :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논의

ㅇ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

-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(위원회 안건 발굴, 상정 및 후속조치 등)
- 여러 부처 새만금 관련 추진사업의 정책 현안에 대한 이견 조정
- 농업·비농업부문, 개발·환경 관리 등 주요 정책의 조정
- 관계부처 간 투자유치 관련 정책의 조정
- 새만금사업 관련 갈등의 관리(중앙↔지자체↔주민)
- 새만금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지원

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(ODA) (7035-315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	일반행정	0	010	012
명칭] 혈반외계	국무총리비서실	정책관실	0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프로그램 단위사업	
코드	7000	7035	315
명칭	국무총리실행정지원	국가적중장기추진과제지원	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		0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रो ले छ	2020년	202	1년	202	2년	증감	
사업명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	2,298	3,159	3,159	3,001	3,001	△158	Δ5.0

4. 사업목적

- OECD 선진국의 제도·경험을 아시아·태평양지역 공무원 등에게 전수 교육 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개도국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제도 선진화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(ODA)
 - (기본경비)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
 - (조세정책) 아·태지역 비회원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선진조세제도 전파와 정책경험 공유
 - (경쟁정책) 아·태지역 경쟁당국 공무원 및 판사 등 대상으로 선진 경쟁법제 및 사례

전파

- (공공관리정책) OECD 회원국의 우수정책 사례를 포럼을 개최하여 개도국과 공유 하고 역내 공무원을 초청하여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행
- (사회정책) 보건·사회·연금 분야별 전문가 국제회의 개최 등 선진 복지정책 전파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ㅇ 법령상 근거
 -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OECD/대한민국 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(조약 제1903호, 2008.7.1., 발효)
 - 경제개발협력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국무 총리 훈령 제490호, 2007.1.5., 제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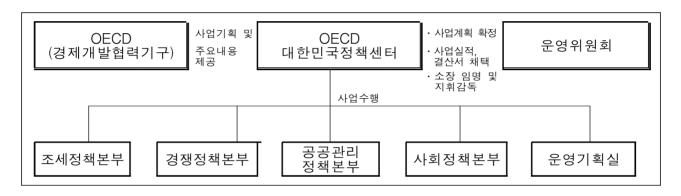
ㅇ 추진경위

- 1997년 이후 OECD와 협력 증진을 위해 4개 부처가 OECD와 MOU를 체결, 관련분야별 센터를 설립·운영
- ※ 조세센터(재정경제원, 1997년9월), 경쟁센터(공정거래위원회, 2004년4월), 정부혁신센터 (행정자치부, 2005년7월), 사회정책센터(보건복지부, 2005년9월)
-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4개 센터를 『OECD 서울센터』로 통합(2007년2월)
- ※ 경제협력개발기구 서울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(국무총리훈령 제490호, 2007.1.5, 제정)
- 대한민국 정부와 OECD 간의 OECD/대한민국 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 각서 (경제협력개발기구, 제1903호, 2008.7.18)에 따라 OECD 서울센터를 『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』로 명칭 변경
- ※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(국무총리훈령 제 523호, 2008.10.27.)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2007 ~ 계속
- ㅇ 사업규모 : 해당없음
- 사업시행방법 : 출연(국제부담금)
- 사업시행주체 :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
- 사업 수혜자 : 아·태지역 OECD 비회원국 조세·경쟁·공공관리·사회정책 등 4개 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내역사업명	구분	피보조 · 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금액 (2022예산)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(국제부담금)	출연	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	3,001	100.0	-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OECD/대한민국 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(조약 제1903호, 2008.7.1., 발효), -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(국무총리훈령 제490호, 2007.1.5., 제정)



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(7035-316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이버스키케	국무조정실 및	청년정책조정실	0	010	012
명칭	일반회계	국무총리비서실	경천경색조경설 	U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000	7035	316
명칭	국무총리실 행정지원	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	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O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	202	1년	202	2년	증감	
^F월경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청년정책총괄	2.545	2.065	2.065	4 122	4 100	1.057	24 5
조정 및 지원	2,545	3,065	3,065	4,122	4,122	1,057	34.5

4. 사업목적

○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조정하는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, 청년 관련 정책의 총괄·조정 및 청년과의 소통 업무 수행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ㅇ 법령상 근거
 - 「청년기본법」제13조(청년정책조정위원회)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

- 제13조(청년정책조정위원회)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둔다.
 - 「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0조2(청년정책조정실장)

제10조2 ① 청년정책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2차장을 보좌한다.

- 1. 청년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
- 2.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- 3. 「청년기본법」등에 따른 청년 관련 제도 관리 및 개선
- 4. 청년정책의 분석 및 이행상황 점검·평가
- 5.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 및 청년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

ㅇ 추진경위

- 청년들의 높은 실업, 힘든 주거여건, 부채 증가 등 심각한 청년문제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, 국회 청년미래특위*에서 여·야 합의로 「청년기본법(안)**, 발의(18.5.21)
- * 여·야 의원 18인 참여, 위원장 이명수(한) 및 간사 김병관(민)·신보라(한)·채이배(바)
- ** 기본계획(5년) 및 시행계획(매년) 수립·시행, 청년정책조정위원회(총리주재) 및 사무국 설치 등
- 정부내 협의를 통해 국조실을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 하는 추진체계* 확정(19.5.2)
- *(靑) 청년소통정책관(政) 청년정책조정위원회(총리주재) 및 사무국(국무조정실)
- 국무조정실 內 청년정책 TF 설치('19.6.3)
- * 법 통과 이전이라도, 범정부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년정책추진단 설치 추진
- 「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개정 공포 및 청년정책추진단 출범(19.7.30)
- 「청년기본법」국회 본회의 통과('20.1.9), 공포('20.2.4) → 시행('20.8.5)
- * 법 시행에 따라. 청년정책추진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(총리주재)의 사무국 역할 수행

6. 주요내용

○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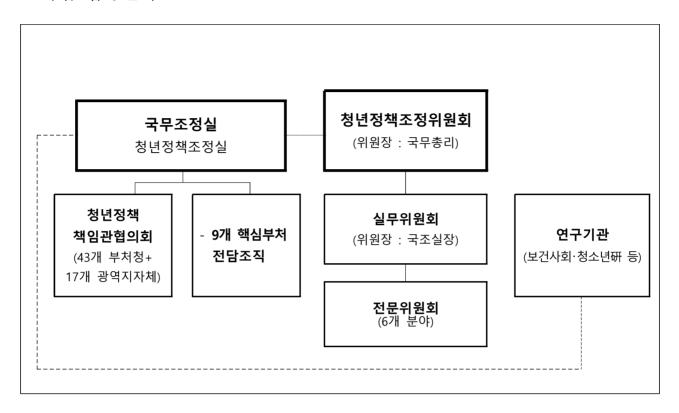
○ 사업기간 : '19~계속 ○ 사업규모 : 해당없음

사업시행방법: 직접수행사업시행주체: 국무조정실

ㅇ 사업 수혜자 : 국민

○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

생활SOC추진단 운영 (7035-318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	생활SOC추진단	0	010	012
명칭] 할만와게	국무총리비사실	78 包50 C 下 包 包	U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000	7035	318
명칭	국무총리실 행정지원	국가적 중장기 추진과제 지원	생활SOC추진단 운영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O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	202	1년	202	2년	증감	
^F월경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생활SOC추진단 운영	1,030	1,156	1,156	1,150	1,150	△6	△0.5

4. 사업목적

○ 부처별로 분절된 생활SOC를 효율적·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 성과를 내 기 위한 범정부 추진단 운영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
- 「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국무총리훈령, '18.11.16)

② 추진경위

- VIP, 생활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확대 지시('18.8.6, 수보회의)
 - * "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. 사람중심 투자로 삶의 질 향상, 지역균형 발전,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 효과"
- '19 정부예산에 생활SOC 투자 확대편성('18년 5.8→ '19년 8.6조원)
 - * 관계부처 합동 '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'(경제관계장관회의, 8.27) 발표
- VIP,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마련 지시(9.4, 구산동 현장방문)
 - * "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필요"
- 「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제정(총리훈령, 11.16) ⇒ 국무조정실 내 '생활SOC 관계부처 합동 추진단' 설치·운영 中
- 생활SOC 관련 국정과제 실천과제 신설(78-⑤)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'19~계속
- ㅇ 사업규모 : 해당없음
- ㅇ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ㅇ 사업시행주체 : 국가
- ㅇ 사업 수혜자 : 국민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<생활SOC 추진체계>

- ◇ (정책협의회) 여러 부처에 분절된 생활SOC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'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'설치·운영
- 구성 : 의장(국조실장), 위원(14개부처 차관, 3개청 차장)
- 기능 : 생활SOC 관련 정책, 재원확보대책, 제도개선 등 협의·조정 (* 생활SOC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자문단 운영)
- ◇ (생활SOC추진단) 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고 범정부적 추진을 위해 설치
 - * 국무조정실장(단장), 국장급 부단장, 각 부처·지자체공무원, 전문가 파견 등으로 총 20명 구성
 - (역할) 생활SOC 중장기계획 수립·이행점검, 생활SOC 협의회 운영, 부처별 생활SOC 사업 조정·지원, 지역 내 협력체제 및 소통채널 구축 등



탄소중립위원회 운영 (7035-319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	2050탄소중립	0	010	012
명칭	글 반외계	국무총리비사실	위원회 사무처	U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프로그램 단위사업		
코드	7000	7000 7031		
명칭	국무조정실 행정지원	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	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	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О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रो ले म	2020년	202	1년	202	2년	증감	
사업명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탄소중립위원회 운영	-	-	- (이체 4,113)	6,806	6,806	6,806	-

4. 사업목적

○ 경제·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,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조성 함으로써 소외계층·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 :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
- 제2조(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)
- 제3조(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)

- 제8조(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분과위원회, 총괄기획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)
- 제9조(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국민정책참여단 구성)
- 제10조(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사무처 설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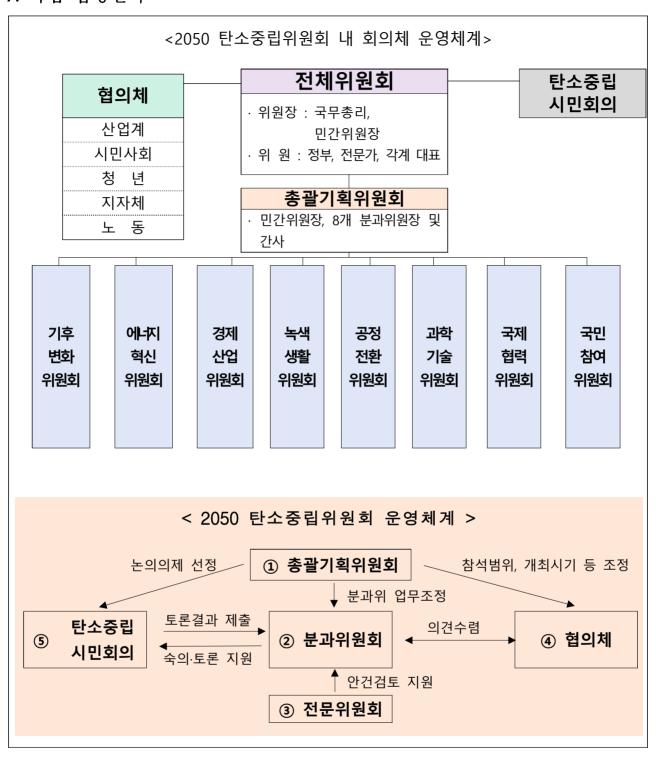
② 추진경위

- 대통령, '21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중 탄소중립 목표 선언' ('20.10.28)
 - * "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."
- 대통령 주재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회의 ('20.11.27)
 - * "민·관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'2050 탄소중립위원회'를 설치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음."
-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('20.12.7)
 - * 탄소중립 거버넌스의 법적근거 마련 전까지 기존조직(국조실 녹색성장지원단 등)을 개편
- 국조실 녹색성장지원단 및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 인력으로 구성된 2050 탄소중립추진준비단 구성·운영 ('20.12.21, 2국 7과 25명 체제)
- 2050 탄소중립위원회 및 사무처 구성·운영 검토 ('21.1월~)
-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·운영 규정 제정령(안) 입법예고 ('21.2.22~3.18)
-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·운영 규정 폐지령(안) 입법예고 ('21.3.12~3.20)
-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·운영 규정 제정령(안) 재입법예고 ('21.4.5~4.15)
 - * 위원회가 위임한 사무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·의결 권한 부여
- 국가기후환경회의 폐지령,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정령 차관회의 ('21.4.22)
- 국가기후환경회의 폐지령,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정령 국무회의 ('21.4.27)
- 국가기후환경회의 폐지령 시행 ('21.4.30)
-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정령 시행 ('21.5.4)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2021 ~ 계속
- ㅇ 사업규모 : 해당없음
- ㅇ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2050 탄소중립위원회
- ㅇ 사업 수혜자 : 국민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

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(7036-301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	총무기획관실	0	010	012
명칭] 달반외계	국무총리비서실	중무기확단결	0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프로그램 단위사업	
코드	7000	7036	301
명칭	국무조정실 행정지원	행정지원	창의적 업무역량 강화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О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	2020년	202	1년	202	2년	증감	
	^የቼማ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3	창의적 업무역량 강화	201	226	226	225	225	△1	△0.4

4. 사업목적

-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통해, 일 잘하는 조직 구현
- ㅇ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직원 업무역량 강화
- 직장교육을 활성화하고 소통과 화합의 행사 등을 진행함으로써, 건전한 공 직관 확립과 조직의 융합·일체감 형성에 기여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ㅇ 법령상 근거

- 공무원인재개발법 제8조(인재개발계획의 작성)

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에 따라 자체의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0조(공무원의 자기개발 등)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 따른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·실천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 및 경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.

ㅇ 추진경위

- '04.9월 국무총리실 간부 대상 삼성경제연구소 위탁교육 실시

- '05년 직원역량모델링을 통해 전문교육컨설팅기관인 PSI에 혁신교육 위탁

- '06년·'07년 실내대학인 OPC아카데미를 설치하여 자체교육 실시

- '08년 정부조직통합에 따라 총리실 '조직문화 활성화 방안' 마련ㆍ시행

- '09~'10년 창조적 조직문화 활성화를 통해 창의·실용적 업무 발굴·개선

- '11년~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 자체직무교육 직접 설계·운영

6. 주요내용

○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
○ 사업기간 : 2005 ~ 계속

○ 사업규모 : 해당없음

○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
ㅇ 사업시행주체 : 국무조정실

ㅇ 사업 수혜자 : 대한민국

○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사전분석

- ▶ 전년도 피드백 분석
- ▶ 금년도 교육운영 니즈(Needs) 조사
- ▶ 국정현안 및 총리실 중점과제 파악
- ▶ 필요 역량과 업무 지식 연구

교육계획 수립

- ▶ 교육 취지와 목적에 따른 기본방향 수립 **→**
 - ▶ 세부운영계획 수립
 - ▶ 교육일정 확정 후 전직원 공지



피드백

- ▶ 과정 완료후 평가
- ▶ 수강 만족도 조사
- ▶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시 반영

교육 실시

- ▶ 전직원 직장교육
- ▶ 직급별/경력별 교육
- ← | , 힐링/인문 프로그램
 - ▶ 현장학습 및 자기개발
 - ▶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

사 업 명 내부 정보화(정보화) (7036-302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	총무기획관실	0	010	012
명칭	그 할만되게	국무총리비서실	중무기확단결	U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프로그램 단위사업	
코드	7000	7036	302
명칭	국무총리실 행정지원	행정지원	내부 정보화(정보화)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О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रो ले छ	2020년	202	1년	202	2년	증감	
사업명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내부 정보화	1,605	1,501	1,501	1,646	1,646	145	9.7

4. 사업목적

- (정보시스템 위탁운영, 정보시스템 유지보수)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전직원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
- (정보보안·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,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위탁운영) 정보보안·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 내 정보보안 기반 강화,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운영
- (SW구입 및 노후장비교체)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용 SW 구입 및 안정된 서비스를 위한 노후 장비 교체
- (영상회의장비 교체) 서울·세종 청사 영상회의실 간 이중화를 위한 관련 장비 추가 설치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ㅇ 법령상 근거
 - 전자정부법 제46조(법률 제17962호, '21.3.23.)

제46조(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·운영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(이하 "아키텍처도입 대상기관"이라 한다)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아키텍처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도입계획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・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・발전시켜야 한다.

-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1조(대통령령 제31380호, '21. 1. 5)

제21조(업무관리시스템) 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업무의 성질상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경우에 그 소속기관 등을 포함하여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-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(대통령훈령 제316호, '13.9.2.)

제10조의2(보안관제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·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(이하 "보안관제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보안관제센터를 설치·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(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)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·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보안관제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수집·탐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보안관제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직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.
- ④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 안관제전문업체의 인원을 파견받아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안관제전 문업체의 지정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ㅇ 추진경위

- (舊)국무조정실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('06.8)
- 온-나라 업무관리시스템 도입('07.1)
- 정부조직 개편에 의해 국조실과 비서실 통합('08.2)
- 통합 온-나라 업무관리시스템 도입('09.2)
- 웹하드 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(*10.6)
- 정보기술아키텍쳐 구축('10.12)
- 인트라넷 기능개선 사업('11.10)
- 정보시스템 세종시이전 및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('12.12)

- 내부업무포털(통합 프라임넷) 기능 개선 사업('13.12)
- 정보시스템 자원통합계획 수립(*14.12)
-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 구축 사업(15.12)
- 내부업무포털(통합 프라임넷) 고도화 사업('16.11)
-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구축('17.4)
- 내부정보시스템(프라임넷) 기능 개선 사업('20.10)

6. 주요내용

○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
사업기간 : '02~계속

○ 사업규모 : 해당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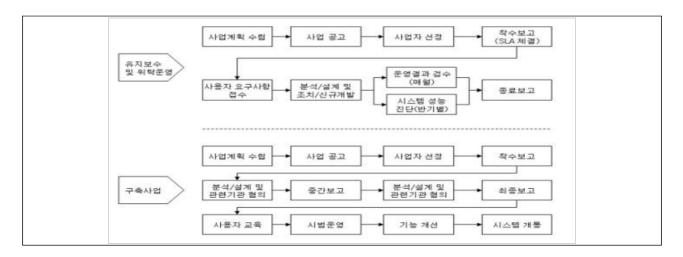
○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
ㅇ 사업시행주체 : 국무조정실

ㅇ 사업 수혜자 : 공무워

○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

사 업 명 공직복무 관리 (7036-303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	공직복무관리관	0	010	012
명칭	[월반외계	국무총리비서실	중식축구된다단	U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000	7036	303
명칭	국무총리실	행정지원	공직복무 관리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О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्रो ले त्त	2020년	202	1년	202	2년	증감	
사업명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공직복무 관리	596	663	663	705	705	42	6.3

4. 사업목적

○ 국무총리의 행정 각부 지휘·통할을 보좌하고,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행정부 내 공직기강 확립업무 수행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ㅇ 법령상 근거
 - 「정부조직법」제18조 (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)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·감독한다.
 - 「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(대통령령 제28534호) 제11조 (공직복무

관리관) ② 공직복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.

- 1. 공직자 사기 진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
- 2. 공직자 고충처리 지워 등에 관한 사항
- 3. 우수공무원 발굴에 관한 사항
- 4.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
- 5.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- 6. 정부 주요 시책 추진상황과 관련된 공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공직자 복무관리와 관련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
- 공직복무관리 업무규정(국무총리훈령 제640호) <생략>

ㅇ 추진경위

-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지휘·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권한 중 공직복무 관리 업무를 총괄·조정하고 공직기강 확립업무를 수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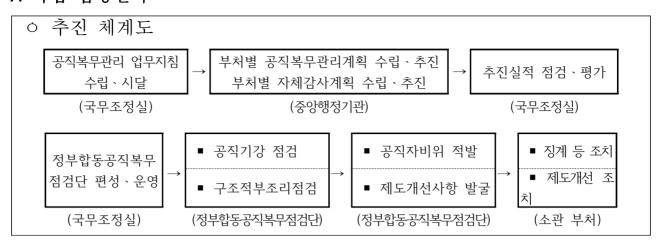
※ 국무조정실의 공직기강 확립기능의 연혁

- '73.01 행정조정실(제4행정조정관실) 설치, 서정쇄신 추진
- '81.11 4행정조정실 서정쇄신기능 이관→ 사회정화위원회
- '89.01 사회정화위 폐지→ 총리실(제4행정조정관실) 이관
- '94.12 2국(사정총괄심의관, 예방심의관) 체제로 변경
- '98.02 1국(조사심의관) 체제로 변경
- '08.02 이명박 정부, 조직 폐지
- '08.7.21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
- '10.7.26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명칭변경(총리실 직제 개정)
- ⇒ 정부 공직기강업무 총괄기관으로 40년 이상의 역사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'08년 ~ 계속
- ㅇ 사업규모 : 해당없음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ㅇ 사업시행주체 : 국무조정실
- ㅇ 사업 수혜자 : 국민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

사 업 명 국무총리 공관관리 (7036-305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	총무기획관실	0	010	012
명칭] 현반외계	국무총리비서실	중무기확단결	U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000	7036	305
명칭	국무총리실 행정지원	행정지원	국무총리 공관관리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О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시어면	2020년	202	1년	202	2년	증감	
사업명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국무총리 공관관리	395	400	400	400	400	-	-

4. 사업목적

○ 국무총리 공관(세종, 서울)의 주요 건축물(주거동, 업무동, 삼청당 등)과 부대시 설의 적정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사업임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○ 법령상 근거 :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,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(헌법 제86조)

6. 주요내용

○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
○ 사업기간 : '61 ~ 계속○ 사업규모 : 해당없음

ㅇ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
○ 사업시행주체 : 국무조정실

○ 사업 수혜자 : 국무조정실

○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- 사업계획수립 ⇒ 공고 ⇒ 계약 ⇒ 계약이행 ⇒ 검사·검수 ⇒ 대금지급 ※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

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(7036-306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무문
코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	총무기획관실	0	010	012
명칭] 혈반외계	국무총리비서실	중무기확단결	0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000	7036	306
명칭	국무총리실 행정지원	행정지원	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О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	202	1년	202	2년	증감	
^F월경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국무총리	1,708	1,801	1 201	1 201	1,801		
국정활동 수행	1,700	1,001	1,801	1,801	1,001	-	_

4. 사업목적

○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활동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내각 통할 등 국정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ㅇ 법령상 근거
 -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,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(헌법 제86조)

-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·감독(정부조 직법 제18조①항)

ㅇ 추진경위

-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활동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각 통할 등 국정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를 매년 계속사업으로 편성

6. 주요내용

○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
ㅇ 사업기간 : 계속

ㅇ 사업규모 : 해당없음

○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
○ 사업시행주체 : 국무총리비서실

ㅇ 사업 수혜자 : 국민

○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- 정책조정 및 현안대책 관련 회의, 민생 현장방문, 민의수렴 및 국정홍보를 위한 간담회, 내·외빈 기념품·선물비, 행사비 등 집행소요 발생 시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예산집행

조세심판 정보화(정보화) (7036-307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	조세심판원	0	010	012
명칭] 혈반외계	국무총리비사실	조세심한권	U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000	7036	307
명칭	국무총리실 행정지원	행정지원	조세심판 정보화(정보화)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O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	202	1년	202	2년	증감	
가입장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조세심판 정보화(정보화)	265	283	283	283	283	-	_

4. 사업목적

○ 조세심판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운영·유지보수를 위탁하고 내부시스템 고도 화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○ 법령상 근거 :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5조, 전자정부법 제3조·4조·16조·20조

ㅇ 추진경위 : 조세심판정보화를 통한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

6. 주요내용

○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
○ 사업기간 : '09 ~ 계속

ㅇ 사업규모 : 해당없음

ㅇ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
○ 사업시행주체 : 조세심판원

ㅇ 사업 수혜자 : 조세심판원 직원 등

○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 : 직접수행

<u>사</u>업명

부패예방추진단 운영 (7036-311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	정부합동	0	010	012
명칭	[월반외계	국무총리비서실	부패예방추진단	U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프로그램 단위사업	
코드	7000	7036	311
명칭	국무총리실 행정지원	행정지원	부패예방추진단 운영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O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र्ग स	2020년	202	2021년 2022년		증감		
사업명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부패예방추진단 우영	677	813	813	416	416	△397	△49

4. 사업목적

- 기존 반부패 조직의 활동에도 불구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부패사각지대^{*} 시정·예방
 - * 소관부처의 대응이 미진하거나 여러 부처의 소관이어서 단일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패· 부조리
- 부처합동 점검체계(여러 부처·기관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부패예방추진단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)를 통해, 부패·부조리의 단발적인 적발·처벌·시정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여 부패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적 관점의 제도개선에 중점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
 -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(舊부패예방감시단, 舊부패척결추진단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(국무총리훈령 제755호)

② 추진경위

- ('14.8) 세월호 사건('14.4)을 계기로 구조적·고질적 부패·부조리 근절을 위해 새로운 점검체계를 갖춘 한시조직으로 출범
 - *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(총리훈령/14.8.13)
- ('15.7, '16.12, '17.8, '19.12, '20.3) 지속적인 부패·부조리 근절 필요성, 점검 성과 등을 고려하여 활동기한 5회 연장
 - * ('20.3.9) 부패예방추진단으로 명칭 변경(예방 강화), 활동기한 연장(~'22.6)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2014년 8월~2022년 6월
- ㅇ 사업규모 : 해당없음
- ㅇ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 - ※ 여러 부처·기관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부패예방추진단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
- ㅇ 사업시행주체 : 국무조정실
- ㅇ 사업 수혜자 : 국민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○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점검과제를 선정하고, 관계부처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실시 및 제도개선 방안 강구

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(7037-301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	공보실	0	010	012
명칭] 현반외계	국무총리비서실	· 도보설	U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프로그램 단위사업	
코드	7000	7037	301
명칭	국무총리실 행정지원	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	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О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रो ले म	2020년	202	1년	202	2년	증감	
사업명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뉴미디어							
정책정보	511	590	590	596	596	6	1
서비스							

4. 사업목적

○ 변화하는 온라인 매체 환경에 맞게 홈페이지·정책블로그·SNS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정책에 대한 온라인 홍보와 양방향 소통 강화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 「국무총리비서실 직제」제2조
 - * 국무총리의 국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(제7항), 국무조정실 업무의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(제9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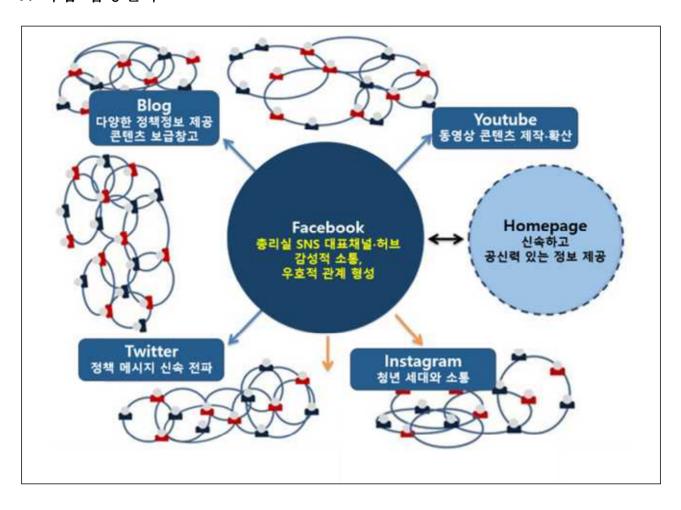
② 추진경위

- 뉴미디어과 신설('10.7) 및 온라인 대변인 지정('10.10)에 따른 관련 업무 신설
- 정책 소통 확대, 국민 참여 제고를 위한 조직·기능 강화
 - * 디지털 콘텐츠 제작·소통 등을 위한 콘텐츠 제작인력(전문임기제 3명*) 확충('18.8)
- 대통령·국무총리의 적극적 정책 소통 활동 지시
- · "당부드릴 것은 국민과의 소통과 홍보입니다. 국민 눈높이에서 편익을 설명하고 성과를 홍보하여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."(19.1.8, 국무회의, 대통령)
- · "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." ('20.1.28, 국무회의, 국무총리)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2012년 ~ 계속사업
- 사업규모 : 해당없음
- ㅇ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ㅇ 사업시행주체 : 국가
- ㅇ 사업 수혜자 : 일반 국민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

국회·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(7037-302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	정무실	0	010	012
명칭	[월반외계	국무총리비서실	민정실	0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000	7037	302
명칭	국무총리실 행정지원	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	국회·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O			О		100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기어퍼	2020년	202	1년	202	2년	중감	
사업명	결산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국회・정당 및							
시민 사회 등과의	1,162	1,972	1,972	1,270	1,270	△702	△35.6
소통강화							

4. 사업목적

- 고위당정협의회, 실무당정협의회, 부처간 당정협의 및 국회 정책설명, 정당원 해외정책연수 및 연찬회 지원 등 대국회 소통강화 등을 통하여 국정현안업무 추진 지원
- 시민사회위원회(국무총리소속 심의위원회) 운영,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, 해외 정책연수 및 연찬회 운영 등을 통해 시민사회와의 소통·협력 활성화 및 시민사회단체의 자생력 강화 지원
- ㅇ 주요 국정현안 점검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의 국정철학 구현 기반 강화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정부조직법(법률 제11690호) 부칙 제3조(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) : "특임장관의 소관사무는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승계한다"
-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2조, 제3조
-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 제31670호. '20.5.26 제정)

② 추진경위

- 정부조직법 개정('13.3.22)에 따라 특임장관실이 폐지되고 소관 사무가 국무 총리 비서실로 이관됨에 따라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정당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업무 수행

6. 주요내용

○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
ㅇ 사업기간 : 계속

ㅇ 사업규모 : 해당없음

ㅇ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
○ 사업시행주체 : 국무총리비서실

ㅇ 사업 수혜자 : 국가

○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내역사업명	구분	피보조 · 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금액 (2022예산)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	
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운영	보조	-	100	100	-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('20.5, 대통령령) 제16조(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의 지정·운영)	

7. 사업 집행절차 : 해당없음

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전출 (8810-880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무조정실 및	총무기획과	0	010	012
명칭	[월반외계	국무총리비서실	중구기획단		일반·지방행정	국정운영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		
코드	8800	8810	880		
명칭	회계기그가기계(저츠그)	KDI 국제정책대학원	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전출		
	회계기금간거래(전출금)	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	(국제정책대학원 시학연금부담금)		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 국고보조율(%)		융자율(%)	
O	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रो ले म	2020년 결산	2021년		2022년		증감	
사업명	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추경(B)	(B-A)	(B-A)/A
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전출	165	91	91	306	306	215	236.3

4. 사업목적

○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법정 부담금 (연금부담금, 퇴직수당부담금)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

※ 연금부담금 : 교원개인부담금 합계액 × 3,706/9,000('21년)

퇴직수당부담금 : 퇴직수당급여 지급에 드는 비용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ㅇ 법령상 근거 :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

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

제46조(국가부담금)

- ① 국가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.
- 1.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- 2. 제48조의3에 따라 교직원이 내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
- 3.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
- ② 국가는 제1항의 부담금을 공단에 내야 한다.
- ③ 국가부담금을 더 내거나 덜 냈을 때에는 다음 기(期)의 국가부담금을 낼 때에 가감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국가부담금을 다음 기의 국가부담금을 낼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(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. 다만,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액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가 납입한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말까지 정산하여야하며, 다음 해 1월 말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하다.

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」

제68조의2(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)

- ① 삭제
-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3,706을 말한다.
- ③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의 금액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5,294로 한다.

제69조의3(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)

-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(이하 이 조에서 "퇴직수당지급 비용"이라 한다)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뺀 금액의 100분의 40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.
- 1. 법 제3조에 따른 유치원·초등학교·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
- 2. 법 제3조에 따른 유치원·초등학교·중등학교만을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 하는 사무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
- 3. 법 제60조의4에 따른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중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에 근무 하는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

- 4. 법 제60조의4에 따른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중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만을 설치·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0조의4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비용은 학교경영기관이 전액 부담한다.
- ③ 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992 년도에 공단이 퇴직수당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.
- ④ 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.
- 1.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
- 2. 제3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
- ⑤ 법인의 해산 등을 이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학교경영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.
-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의 부담금액을 산정할 때에 퇴직한 교직원이 둘 이상의 학교경영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로서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경영기관별로 그 재직기간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. 이 경우 제63조의3 각 호에 따른 비율이 달라지게 되어 퇴직수당 총 지급액과 해당학교경영기관이 각각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차액은 국가가 부담한다.
-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매월 실제 소요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퇴직수당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에 납부한다.
- ⑧ 제4항, 제5항 및 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연도에 국가가 부담한 금액이 실제 든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부담금에서 이를 정산한다.

ㅇ 추진경위 : 해당없음

6. 주요내용

○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
ㅇ 사업기간 : 계속

ㅇ 사업규모 : 해당없음

○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
○ 사업시행주체 :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
ㅇ 사업 수혜자 : 사립학교 교직원

○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 : 해당없음